국민참여재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상사건이 법원의 합의부에서 관할하는 사건이어야 하고, 피고인의 신청도 필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증인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해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최종변론이 종결되면, 배심원은 재판장의 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의를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그 결과 유죄인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양형에 관한 토의가 진행되고 배심원 각자는 양형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평결과 양형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 1
1. 국민참여재판의 개관 4
1.1.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4
1.1.1.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4
1.2.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6
1.2.1.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6
1.2.2.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의 배제 10
2. 배심원 선정 11
2.1. 배심원 후보자 선정 등 11
2.1.1. 배심원 후보자 선정 11
2.1.2. 배심원 선정기일 11
2.2. 배심원 선정절차 14
2.2.1. 배심원·예비배심원 선정 14
2.2.2.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해임·선임 등 18
2.3. 배심원의 직무수행보장 20
2.3.1.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20
2.3.2. 배심원 보호 21
3. 배심원의 재판참여 23
3.1. 공판절차 23
3.1.1. 공판절차에서의 참여 23
3.2. 평의·평결 절차 26
3.2.1. 평의·평결 절차에서의 참여 26

1. 국민참여재판의 개관

1.1.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1.1.1.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및 특징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대한민국 법원 국민참여재판 누리집 참조).

▪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대한민국 법원 국민참여재판 누리집 참조).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 국민참여재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국민참여재판 누리집 참조).

▹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지만, 만장일치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를 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개진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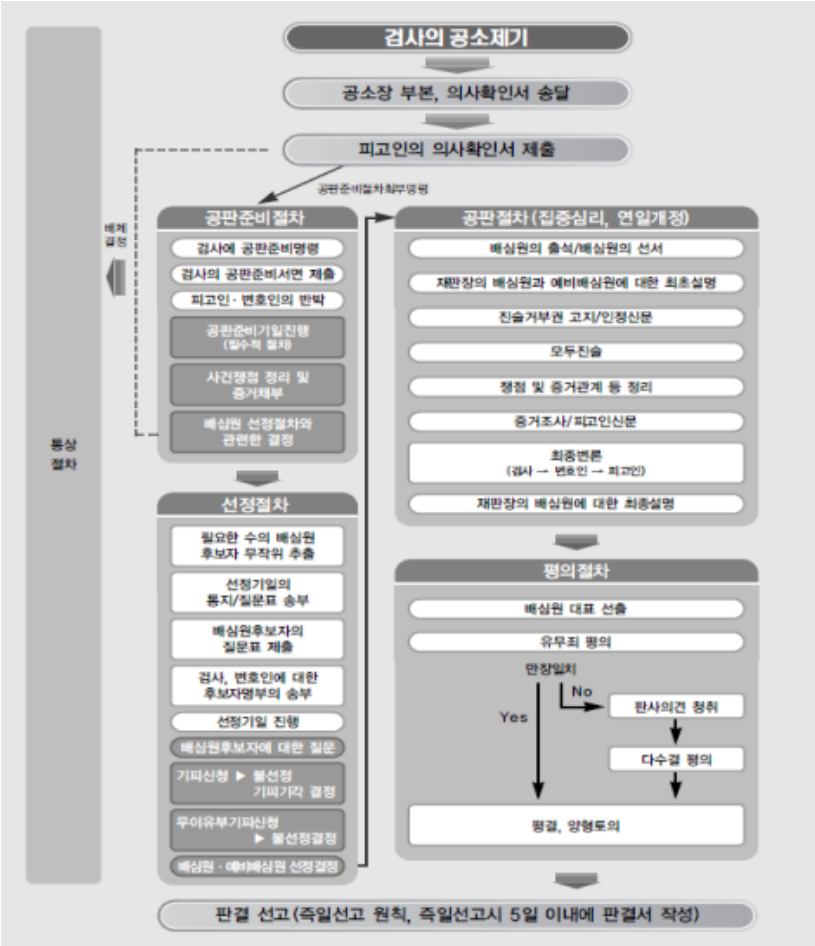
※ 배심제와 참심제

구분	내용
배심제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기속되는 제도
참심제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양 제도에 일정한 수정을 가하였다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국민참여재판 누리집(https://국민참여재판.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흐름도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2007, 법원행정처, 15면>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그림자배심의 의의

▪ 그림자배심원(Shadow Jury)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되며 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한 후 유·무죄에 관한 평의·평결과 양형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들의 평결내용을 재판에 반영하지 않으며, 평결과정이 공개될 수 있는 점이 정식 배심원과 다른 점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그림자배심 참가신청 참조).

▪ 일반 국민들은 그림자 배심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제 사건에 대한 생생한 법정 공방을 체험하고 실제 평의와 같은 방법으로 유·무죄 및 양형 등 재판 결과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그림자배심 참가신청 참조).

※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참가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그림자배심 참가신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1.2.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1.2.1.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대상사건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

1. 합의부(판사 3인으로 구성)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3. 위의 2.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4.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5. 위의 1.~4.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6. 위의 1.~5.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해 심리하는 사건

▪ 다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사건은 제외합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1.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3. 「병역법」 위반사건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5.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6.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

법률명	해당조문	죄명	비고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각 죄의 미수범 포함
	제331조	특수절도	
	제332조	상습특수절도	
	제350조의2	특수공갈	
	제363조	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	상습장물알선 포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형법」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형법」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형법」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	각 죄의 미수범 포함
	제2조제3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형법」 제257조제2항(존속상해), 「형법」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형법」 제350조(공갈)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9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병역법」		「병역법」 위반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4제5항제1호·제3호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사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위조·변조자의 형사책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항제1호	음주운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10조제1항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의 처벌	

공소사실의 변경 등

Q 1) 공소사실이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A 1)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심판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Q 2) 공소가 제기될 당시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공소장 변경에 의해 비로소 대상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A 2) 피고인이 원한다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또는 재정합의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본문).

·공소장 변경에 따른 피고인의 의사확인서 제출기한의 기산일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24~25면>

피고인의 의사 확인

피고인의 의사 확인 절차

▪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전단).

▪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5조).

▪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전단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사건번호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의사확인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때 또는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서면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

※ 피고인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배제결정 또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피고인의 의사 재확인

▪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만으로는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해 피고인을 심문하거나 서면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하고,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심문기일에 피고인을 출석시켜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의사확인서 미제출 시

▪ 피고인이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외국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Q 1) 피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1)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인뿐 아니라 외국인인 피고인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Q 2) 지방법원 지원에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2) 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여 직접 심리하기로 하지 않는 한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여 대상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 중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권을 가집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출처: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23면>

1.2.2.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의 배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배제결정 절차

▪ 배제결정 전 의견제출

▹ 법원은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심문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을 연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 배제결정

▹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즉시항고

▹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 ※ “항고”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항고에는 일반항고와 재항고의 두 종류가 있으며, 일반항고는 다시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누어집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즉시항고는 특히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항고이며, 보통항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광범위하게 법원의 결정에 대해 허용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별규정 중에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 배심원 선정

2.1. 배심원 후보자 선정 등

2.1.1. 배심원 후보자 선정

배심원 후보자 선정방식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선정

▪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 지방법원장은 매년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0.3%부터 0.5%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등재될 인원을 정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14조).

·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매년 9월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성별(성별 및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할 수 있음)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 지방법원장은 송부받은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해 매년 12월 31일까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 배심원후보자 선정 및 그 밖에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관리는 「배심원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13조).

2.1.2. 배심원 선정기일

배심원 선정기일 지정 및 통지

선정기일 지정

▪ 법원은 선정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선정기일 통지기간, 공판기일 등의 사정을 고려해야 하고, 배심원후보자가 출석하는데 불편함과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야 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16조제1항).

▪ 법원은 배심원 선정기일과 제1회 공판기일을 같은 날로 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선정기일 진행에 고려되는 시간을 고려해 선정기일과 공판기일 사이에 적당한 시차를 두어야 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16조제2항).

※ 참고로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 선정기일이 종료된 후 연속하여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되도록 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9조).

선정기일 통지

▪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해 배심원후보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반송용 봉투와 함께 송달하는 방법으로 선정기일을 통지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18조 전단).

- 선정기일 통지서
- 불출석사유 신고서
- 질문표
- 배심원 안내서

배심원 후보자의 선정기일 출석 및 면제신청서 제출

▪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8조제2항).

-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전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취소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

선정기일 출석시 주의사항
Q) 선정기일 출석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선정기일에는 지정된 일시, 장소로 출석해야 하고, 출석통지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같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출처: 「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3면>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출석취소

출석통지 취소

▪ 법원은 통지 이후 배심원의 직무 종사 예정기간을 마칠 때까지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출석통지를 취소하고 신속하게 해당 배심원후보자에게 선정기일 출석취소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21조제1항).

▪ 통지는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21조제2항).

※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배심원 선정-배심원 선정절차-배심원·예비배심원 선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일 진행 및 조서 작성

선정기일 진행방식

▪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선정기일의 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선정기일에 관해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 “수명법관”이란 재판장의 명에 따라 합의부를 대표해 화해권고, 증거조사, 공판준비 등의 소송행위를 하는 법관을 말합니다.
>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선정기일은 공개하지 않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선정기일에는 배심원후보자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배심원후보자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해당번호로만 호칭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9조).

▪ 법원은 선정기일의 속행을 위해 새로운 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새로운 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출석통지서의 송달이 있었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선정기일 조서 작성

▪ 선정기일의 절차에 관해서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선정기일 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형사소송법」 제5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 선정기일을 진행한 일시와 법원
-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
-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 피고인의 출석여부
-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법원이 부여한 번호
-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여부
-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진술 요지
- 배심원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와 그 이유
- 불선정 결정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구술로 한 면제 신청과 그에 대한 결정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기피신청과 그에 대한 결정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그 이유 및 그에 대한 결정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무이유부기피신청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한 취지

선정기일 조서의 증명력

▪ 선정기일의 절차로서 선정기일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며 다른 반대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증명력**을 갖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63면).

> · "증명력"이란 증거가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그 판단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는데 이것을 "자유심증주의"라 합니다.
>
> <출처: 「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15면>

2.2. 배심원 선정절차

2.2.1. 배심원·예비배심원 선정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선정

무작위에 의한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선정

▪ 법원의 직권, 기피신청 또는 무이유부기피신청에 따른 배심원·예비배심원 불선정 결정 절차를 거쳐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후보자가 확정되면 법원은 무작위의 방법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예비배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순번을 정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확정되면 배심원석의 좌석번호를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부여합니다. 재판장은 참여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예비배심원에 해당하는 번호를 추첨함에서 무작위로 추첨하게 해서 예비배심원을 정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28조).

> ※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수
>
>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 ·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7인과 9인 중에서 위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 · 법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해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누가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 또한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누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를 변론종결시까지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2조).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Q)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중 일부에게 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인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평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 권한과 의무에 있어 차이가 없으나, 평의와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오로지 배심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4면>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선정방법

▪ 재판장은 배심원 선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해당 사건의 내용,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의 수,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24조).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후보자를 먼저 뽑은 후,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과 기피신청 및 무이유부기피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 모든 배심원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을 한 후,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후보자를 뽑아 그들을 대상으로 기피신청 및 무이유부기피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 배심원 직무 배제사유 심사방식

·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질문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직접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선정기일에서의 질문은 배심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고, 배심원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 재판장은 원활한 소송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질문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27조).

· 배심원후보자는 질문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3호).

배심원 직무 배제사유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8조).

- 대통령
-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 법관·검사
- 변호사·법무사
- 법원·검찰 공무원
- 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예비군

제척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9조).

- 피해자
-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사건에 관한 증인·감정인·피해자의 대리인
-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대리인·변호인·보조인
-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사람
- 사건에 관해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사람

면제사유

▪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0조).

- 만 70세 이상인 사람
-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사람

-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 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 중병·상해 또는 장애로 인해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 ※ 배심원 직무의 면제신청은 다음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선정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2항).
>
>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주소
>
> ·선정기일의 일시, 장소
>
> ·배심원 직무수행의 면제사유(소명해야 함)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

기피신청

▪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불선정결정을 해야 합니다.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고지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무이유부기피신청

무이유부기피신청의 의의

▪ "무이유부기피신청"이란 검사와 변호인이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기피신청을 말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무이유부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 검사와 변호인은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함에 있어 편견에 기초하거나 배심원후보자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

신청범위

▪ 검사와 변호인은 다음의 범위 내에서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배심원이 9인인 경우는 5인
- 배심원이 7인인 경우는 4인
- 배심원이 5인인 경우는 3인

신청방식

▪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순서를 바꿔가며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2.2.2.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해임·선임 등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의 해임

해임사유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해임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의 선서를 하지 않은 때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다음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
  - √ 심리 도중에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 평의·평결 또는 토의 장소를 떠나는 행위
  - √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행위
  - √ 재판절차 외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평의·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출석의무에 위반하고 계속해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때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때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질문표에 거짓 기재를 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것이 밝혀지고 계속해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때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명한 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폭언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언행을 하는 등 공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때

해임신청

▪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해임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제2항).

- 사건번호
- 신청인의 성명
- 해임대상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배심원번호
- 해임사유(소명필요)

해임결정

▪ 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법원도 해임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출석한 해당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 해임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의 사임

배심원의 사임신청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 사임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제2항).

- 사건번호
- 배심원·예비배심원의 성명 또는 배심원번호
- 사임사유(소명필요)

법원의 사임결정

▪ 법원은 사임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 법원은 사임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6조제4항·제6항).

- 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사임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와 서면의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임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배심원의 추가선정

배심원을 추가선정하는 경우

▪ 배심원의 해임 또는 사임에 따라 배심원이 부족하게 된 경우 예비배심원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배심원이 됩니다. 이 때 배심원이 될 예비배심원이 없는 경우 배심원을 추가로 선정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배심원을 추가선정하지 않는 경우

▪ 국민참여재판 도중 심리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배심원을 추가선정하여 재판에 관여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남은 배심원만으로 계속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심원이 5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배심원을 추가선정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 1인의 배심원이 부족한 때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배심원이 부족한 때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공판절차 개시 후 배심원이 추가선정된 경우
>
> √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 √ 갱신절차는 새로 참여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쟁점 및 조사한 증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2.3. 배심원의 직무수행보장

2.3.1.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여비·일당 등 지급

여비·일당 등 지급기준

▪ 법원은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일수에 따른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배심원·예비배심원이 격리된 때에는 격리된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식비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숙박료는 출석 등에 필요한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 ※ 숙박료의 항목과 그 금액은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

▪ 법원은 출석한 배심원 등이 선정기일 또는 공판기일의 변경이나 그 밖에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배심원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배심원 등에게 여비·일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41조).

여비·일당 등 지급시기

▪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은 선정기일, 공판기일 및 평의가 종료한 때 매 기일별로 지급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39조제1항).

▪ 격리수당은 격리가 끝난 후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다만 격리 후에 기일이 진행되어 여비·일당 등을 지급할 때 격리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39조제2항).

여비·일당 등의 감면

▪ 감면사유

▹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여비·일당 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0조).

√ 배심원후보자에게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가 있는 때

√ 배심원·예비배심원이 해임된 때

√ 배심원·예비배심원에 대해 사임신청에 따른 해임결정이 있는 때

▪ 감면기준

▸ 법원은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을 감면할 때에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40조).

감면사유	감면기준
배심원후보자에게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또는 제척사유가 있는 때	기본 여비·일당 등의 25% 범위 내에서 감액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아니함
배심원후보자에게 면제사유가 있는 때	면제사유에 따라 기본여비·일당 등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지급가능
배심원·예비배심원이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된 때	해당 기일의 여비·일당 등의 전액 지급하지 아니함
배심원·예비배심원에 대한 사임신청에 따른 해임결정이 있는 때	사임사유에 따라 해당 기일의 기본 여비·일당 등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지급가능

2.3.2. 배심원 보호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불이익취급의 금지

▪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제한

▪ 누구든지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 누구든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직무에 종사하였던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경우는 허용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협조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보호

▪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성명·주소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 개인정보 공개절차

· 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확인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4조제2항).

· 동의여부 확인은 서면에 의합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나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4조제3항).

√ 구술로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담당공무원 등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4조제5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개인정보공개의 동의 여부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위 기간 내에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4조제4항).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보호, 격리, 숙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 재판장은 배심원·예비배심원을 격리하는 경우에는 신문·방송 시청 금지, 전화·인터넷 사용 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5조제1항).

▪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재판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 신변안전조치

· 신변안전조치의 요청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선정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 등은 요청의 취지와 사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5조제2항·제3항).

√ 요청인

√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요청사유

3. 배심원의 재판참여

3.1. 공판절차

3.1.1. 공판절차에서의 참여

공판절차

공판기일 통지 및 배심원 등의 출석

- 공판기일 통지
  - 공판기일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8조).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출석
  - 공판정은 판사·배심원·예비배심원·검사·변호인이 출석하여 개정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예비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

배심원의 선서 및 재판장의 설명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서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취지의 선서를 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 재판장의 모두설명
  -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권한·의무·재판절차, 그 밖에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 진술거부권 고지
  - 피고인은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제1항).
  -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제2항).
- 인정신문
  -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84조).

모두진술

- 검사의 모두진술
  - 검사는 공소장에 의해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5조).

▪ 피고인의 모두진술

▹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제1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제2항).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해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해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7조제2항).

증거조사 및 피고인신문

▪ 증거조사

▹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 과정을 지켜 봅니다. 또한 배심원은 피해자, 목격자 등 증인신문을 지켜 보는 것과 같이 증거조사절차에 참여합니다(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절차안내-형사-국민참여재판 안내-공판절차-증거조사).

> ※ 배심원의 증거조사 참여
>
>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공판정 외에서 검증,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출석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항).
>
> √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공판정 외 증거조사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6조제2항).
>
>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4조).

▪ 피고인신문

▹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6조의2제1항).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6조의2제2항).

최종변론

▪ 검사의 의견진술

▹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해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2조 본문).

▹ 다만,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받고 출석하지 않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해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8조 및 제302조 단서).

▪ 변호인·피고인의 의견진술

▹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3조).

재판장의 설명

▪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다음의 사항에 관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항).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의 각 원칙

▹ 피고인의 증거제출 거부나 법정에서의 진술거부가 피고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

▹ 「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2절의 각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배제된 증거를 무시해야 한다는 점

▹ 심리 도중에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 평의·평결 또는 토의 장소를 떠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의·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의무

▹ 평의 및 평결의 방법

▹ 배심원 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취지 및 그 방법

> **※ 법령용어해설**
>
> ·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
> · “증거재판주의”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함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제1항).
>
> · “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은 증거능력과는 달리 법률상 구속을 받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진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
> <출처: 「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14~15면>

배심원 참여

배심원의 신문요청

▪ 신문요청권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피고인·증인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해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

▪ 신문요청 시기 및 방법

▹ 신문요청은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직후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3조제1항).

▪ 재판장의 통제

▹ 재판장은 공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 의해 요청된 신문 사항을 수정하여 신문하거나 신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3조제2항).

배심원의 필기

▪ 필기 허용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호).

▪ 재판장의 통제

▹ 재판장은 공판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한 필기를 언제든지 다시 금지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

▹ 재판장은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평의 도중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필기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할 것을 주지시켜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4조제2항).

변론종결 후 예비배심원의 임무

예비배심원의 임무

▪ 재판장은 종국재판의 고지 전까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배심원으로 하여금 법원 내 지정된 장소로 출석해 그 곳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

▪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면서 예비배심원에게 다음의 의무를 주지시켜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8조제2항).

▹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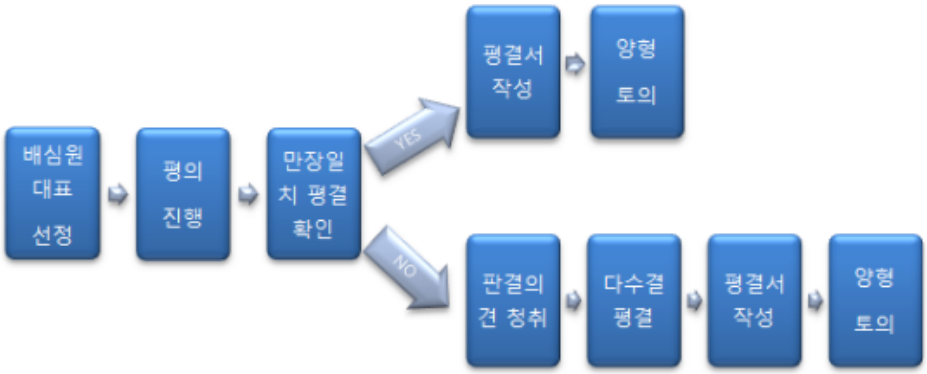
▹ 재판절차 외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

3.2. 평의·평결 절차

3.2.1. 평의·평결 절차에서의 참여

평의·평결 절차

평의·평결 절차의 흐름



평의·평결의 기일 지정

▪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변론이 종결된 후 연속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장은 평의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를 위한 기일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9조제1항).

※ 평의·평결의 비공개

·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평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배심원 이외의 누구도 평의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9조제2항·제4항).

· 재판장은 법원경위 등으로 하여금 평의실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9조제3항).

· 법원사무관 등은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가 종료된 직후 배심원이 해당 재판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를 지체 없이 수거하여 폐기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9조제5항).

※ 평의·평결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누설 금지

· 배심원은 평의·평결 및 토의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 및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7조).

·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2항).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협조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평의와 평결

Q) 평의와 평결은 무엇인가요?

A) 평의는 법정 공방이 끝난 후 배심원들이 모두 모여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평결은 평의를 통해 확정된 배심원의 최종 판단 결과를 의미합니다.

<출처: 「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7면>

평의절차에서의 배심원 참여

배심원 대표 선출 및 임무

- 배심원은 평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호선으로 배심원 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다만, 호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배심원 대표를 지정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 배심원 대표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 배심원 평의의 주재
  - 평의실 출입 통제의 요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판사에 대한 의견 진술의 요청
  - 증거서류 등의 제공 요청
  - 평결 결과의 집계
  -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집계한 서면(이하 "평결서"라 함)의 작성
  - 평결서의 전달

배심원 및 판사의 의견진술

- 배심원 대표는 평의를 주재하면서 배심원 각자가 충분하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단서).
-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해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전단).

  ※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도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1조제5항).

배심원의 증거서류 제공 요청

- 배심원은 평의를 진행하는 도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심원 대표를 통해 재판장에게 공소장 사본, 재판장 설명서가 존재하는 경우 그 사본, 증거서류 사본 및 증거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1조제2항).
- 재판장은 증거제공요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심원에게 공소장 사본, 재판장 설명서 사본, 증거서류 사본 및 증거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1조제3항).

배심원이 추가 선정되는 경우

- 재판장은 평의가 시작된 후 예비배심원이 배심원으로 추가 선정된 경우에는 배심원들로 하여금 평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1조제4항).

평결절차에서의 배심원 참여

유·무죄 평결

- 유·무죄 평의에서의 배심원 의견 일치

▹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해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본문).

▪ 유·무죄 평의에서의 배심원 의견 불일치

▹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해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합니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평결서 작성 및 전달

▪ 배심원 대표는 평의가 종료되면 배심원 전원에 대해 개개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 유죄의견의 수, 무죄의견의 수로 구분하여 평결서를 작성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2조).

▪ 배심원 대표는 평결서를 작성한 후 배심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공된 봉투에 넣어 봉인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35조제1항).

▪ 배심원 대표는 평결서를 봉인한 후 즉시 재판부에 연락해 봉인된 평결서를 전달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35조제2항).

양형토의

▪ 평결이 유죄인 경우 양형토의

▹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 양형의견서 작성

▹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배심원과 양형에 관해 토의를 한 때에는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집계하여 그 결과를 양형의견서에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37조).

평결과 양형의견의 효력

▪ 평결과 양형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

평결과 양형의견의 효력

Q)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배심원이 법정 공방을 지켜 보고 토론을 거쳐 내린 평결과 양형의견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출처: 「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9면>

판결선고

판결선고 절차

▪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배심원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3조).

▪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를 선고 후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 재판장은 판결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해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

배심원의 임무 종료

배심원의 임무 종료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임무는 종국재판을 고지한 때 종료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